

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

2013. 6.

**국 토 교 통 부
건 설 안 전 과**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 357호

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,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 산출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인 『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』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6월 25일

국토교통부 장관

□ 개정이유

- 「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」상 품질시험기준이 KS규정 변경 등 현실 여건 변화를 반영
 - 품질시험비 산출 기준이 되는 「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535호, '12.8.20)」은 '94년 제정 이후 공공요금, 인건비 산출 단위량기준 등의 여건변화가 반영되지 않았고
 - 품질시험기준 상의 시험종목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품질관리 소홀 요인이 될 수 있음

□ 주요내용

- 품질시험기준 상의 시험종목에 맞추어 '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의 시험종목 조정과 현실여건 변화 반영'
 - 시험 대상 공종·자재 및 시험종목 추가(286종목→2,153종목)
 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'10.12.20 공포)에 따른 조항 등 변경
 - 인력 노임단가에 '가스요금 단가' 신설

<신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①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①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제6항 및 제7항,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단위량 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</p>
<p>제2조(정의)-----</p> <p>1.(생략)</p> <p>2.(생략)</p> <p>3."관리인력"이라 함은 <u>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·공립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4."시험인력"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, 시험인력의 등급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특급, 고급, 중급, 초급 품질관리원으로 구분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-----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(삭제)</p> <p>2."관리인력"이라 함은 <u>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중에 최상위 등급자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·검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3."시험인력"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, 시험인력의 등급은 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특급,고급, 중급, 초급품질관리원으로 구분한다.</p>
<p>제3조(적용범위)①법 제24조제6항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 적용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3조(적용범위)①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,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 적용한다.</p>
<p>제4조(산출단위량 및 적용) ①,② (생략)</p>	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단가 적용) ①인력의 노임단가</p>	<p>제4조(산출단위량 및 적용)①,② (현행과 같음)</p>

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-----

-----다만, 제2조제4호의 품질
관리원 등급

② -----

1.2.(생략)

3.(신설)

제6조(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 방법
등)① 내지④ (생략)

⑤(⑥항으로 이동)(신설)

⑥(⑤항에서 이동)(생략)

제7조(장비손료 산정방법)①장비손료
는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산
정하되,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반영시
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인건
비의 3/100을 곱하여 산정한다.

②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·공립시
험기관이 품질시험대행비 산출시에
는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산
정할 수 있다.

제8조(재검토기한)

----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
한다.

부 칙 <제2012-535호, 2012.8.20>

제5조(단가 적용) ①

1. (현행과 같음)

2.-----

-----다만, 제2조제3호의 시험인
력

②-----

1.2.(현행과 같음)

3. “가스요금 단가”는 시·도별 도
시가스 요금표의 ‘일반용 1’을 적
용한다

제6조(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 방법
등)①내지④ (현행과 같음)

⑤ 가스요금은 별도의 시험종목별 산
출단위량에 제5조제2항제3호의 가스
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

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장비손료 산정방법)①장비손
료는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
라 산정하며, 품질검사전문기관
및 국공립시험기관이 품질품시
험·검사대행비 산출시에도 적용
한다

② (삭제)

제8조 (재검토 기한)

--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
다.

<p>제1조(시행일) <u>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②(신규)</p> <p>[별표] 품질시험비 산출시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 - <u>시험 대상 공종·자재 및 시험종목 286종목(별첨)</u></p>	<p>부 칙<2013.6 . 30 ></p> <p>제1조①(시행일)<u>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②(적용례)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<u>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.</u></p> <p>[별표] 품질시험비 산출시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 - <u>시험 대상 공종·자재 및 시험종목 2,153종목(별첨)</u></p>
---	--